

##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5일
신청인	① 상호(성명)		
	② 연락처		
사용자 (실수요자)	③ 상호(성명)	④ 수입국	⑤ 용도
	⑥ 주소 (연락처: )		
해당 생물 (약기재료) 명세	⑦ 학명	⑧ 부속서	
	⑨ 사용 부분	⑩ 재료 원산지	
해당 약기 명세	⑪ 약기의 종류	⑫ 제작사	⑬ 제작연도
	⑭ 생산국가		
	⑮ 입수 시기 및 경위		
	⑯ 일련번호 또는 제작번호 등 약기 식별을 위한 세부 사항		
기타	사용계획(개인적 이용, 유·무료 공연, 전시, 방문국가 및 일정 등 포함)	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역 환경청장  
(지방환경청장)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해당 약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약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약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.6센티미터, 세로 10.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약기 사진 1장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### 처리절차

